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3호
----------	--------

제출년월일 2025. 1.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 긴급지원 대상자의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를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기준 구체화 (안 제3조)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조항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11. 1. ~ 11. 21.(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나) 경 기 도 : 복지사업과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를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4호 중 “취업성공패키지” 를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 을 “따른 생계급여” 로,

“수급자” 를 “생계급여 수급자”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급여” 를

“생계급여”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을

“생계급여 신청 후”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급여종류별” 을

“생계급여” 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통해” 를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로 한다.

9.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복지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복지정책과장 강영화
	팀장 직위·성명	통합돌봄팀장 한은진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나윤주(☎564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u>긴급복지지원법</u>」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p> <p>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u>단서 신설</u>></p> <p>2. · 3. (생 략)</p> <p>4. 주소득자가 <u>취업성공패키지</u>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u>단서 신설</u>></p> <p>5. · 6. (생 략)</p> <p>7.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신청자 또는 <u>수급자</u>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신청자의 <u>급여</u>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나. <u>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u>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p>	<p>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u>긴급복지지원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p> <p>-----</p> <p>-----</p> <p>-----</p> <p>-----.</p> <p>1. -----</p> <p>-----. <u>다만,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국민취업지원제도</u> -----</p> <p>-----</p> <p>-----.</p> <p><u>다만, 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u></p> <p>5. · 6. (현행과 같음)</p> <p>7. ----- <u>따른 생계급여</u> -- <u>생계급여 수급자</u>-----</p> <p>-----</p> <p>가. ----- <u>생계급여</u>-----</p> <p>-----</p> <p>나. <u>생계급여 신청 후</u> -----</p> <p>-----</p> <p>-----</p>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
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생 략)

9.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
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
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
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 12. (생 략)

<신 설>

제4조 (생 략)

다. 생계급여 -----

8. (현행과 같음)

9.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6
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
----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

11.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
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한다.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1.>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단수·단가스, 단전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10.18.>
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8.10.18>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